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67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포상업무 소관 부서에 따른 담당과장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규정을 삭제하고 포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5조)
- 나. 포상업무 관리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 현행화하고 용어를 순화함(안 제10조)
- 다. 포상 분실 등으로 추가발급을 원할 경우에 사실확인서로 발급하는 내용 신설(안 제14조)
- 라. 그 밖의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4. 28. ~ 5. 18.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나) 경 기 도 : 인사과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시소속 직원, 시민”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김포시민”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중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성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를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인이나 단체에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상장은”을 “포상을 할 때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및 그 밖의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2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포상통제)”를 “(포상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 위하여”로,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를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의 포상은 총무과장과, 민간인 또는 단체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이 경 희
	팀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현 계 자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이 정 은(☎2105)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공적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추천훈격			(16)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경력			
(21)년월일	(22)이력	(23)년월일	(24)이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년월일	(26)내용	(27)년월일	(28)내용
(29)공적사항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수여당시) / 직급(수여당시)	
포 상 내 역	포상번호	
	포상구분	
	포상년월	
	공적분야	
용 도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직 인)

[발급자]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u>의한</u>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u>시소속 직원, 시민</u>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2조(포상대상) ----- <u>따른</u> ----- ----- ----- <u>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김포시민</u> ----- ----- -----.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u>시장</u> 이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 <u>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생략)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u>자</u> 3. (생략)	제5조(표창장)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 (현행과 같음) 2. ----- ----- <u>사</u> <u>람</u> 3. (현행과 같음)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u>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성양시킨 개인이나 단체</u> 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 ----- <u>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인이나 단체에게</u> -----.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생략) 2. 학술, 예술, 체육 <u>기타</u>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생략)	제7조(상장)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 (현행과 같음) 2. ----- <u>등</u> ----- ----- 3. (현행과 같음)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u>①포상은</u>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u>① 포상은</u>

별지 1호 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
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읍
·면·동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
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 제1항
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
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
에게 상신할 수 있다.다만, 시민 20
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
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
아서 행한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의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 그 밖의
-----.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시의 담
당관, 과장, 읍·면·동장 및 그 밖
의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 20명 이상
-----.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협의) -----
----- 도모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의
포상은 총무과장과, 민간인 또는 단
체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과 협의
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14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 설>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①성 명	한자 원명		
②생년월일	③군번(군인의 경우)		
⑤주 소	④국적(외국인에 한함)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공 적 기 간	
⑪공적요지 (50자 내외)	⑫공적분야코드	-	
⑬추천훈격	⑭추천순위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		
⑰직 급	⑱성 명	㉑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 면)

주 요 이 력 및 경 력			
⑲ 년 월 일	⑳ 이 력	㉑ 년 월 일	㉒ 이 력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㉓ 년 월 일	㉔ 이 력	㉕ 년 월 일	㉖ 이 력
㉗ 공 적 사 항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공적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추천훈격	(16)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경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23)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년 월 일	(26) 내 용	(27)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김포시 포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숭선수범한 자 <개정 2020. 7. 1.>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성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1호 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2008. 1. 4., 2022. 9. 21.>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9.>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1998. 10. 13., 2013. 7. 15., 2015. 8. 4., 2018. 9. 3., 2024. 3. 27.>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김	포	시	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김	포	시	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문)

년 월 일

김 포 시 장 ○ ○ ○ ①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31>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①성 명	한자 원명		
②생년월일			③군번(군인의 경우)
⑤주 소			④국적(외국인에 한함)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공 적 기 간	
⑪공적요지 (50자 내외)		⑫공적분야코드	-
⑬추천훈격		⑭추천순위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	
⑰직 급		⑱성 명	⑲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 면)

주요 이 력 및 경 력			
①9 년 월 일	②0 이 력	②1 년 월 일	②2 이 력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②3 년 월 일	②4 이 력	②5 년 월 일	②6 이 력
②7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illegible]

1. 포상대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이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 **현황**

- 각 시·도 및 **지방의회**는 시정 또는 사회 공헌 공적이 현저한 **시민·소속 공무원** 등의 **포상**을 위해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
 - 포상은 표창장 및 상장·감사장 등으로 구별하며, **포상권자**는 시·도지사로 하되,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포상 대상자**에게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보**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 부여

□ **문제점**

- ① **포상 대상자 결정** 절차인 **공적심사**를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청 재량** 행사의 **구체성·객관성 결여** 우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포상**은 **공정성·영예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적**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필요
 - 공적심사를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포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이 임의로 **표창장**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며
 - 이 경우, **포상**에 기반한 **상금·부상, 인사상 우대 조치**도 **남용**되게 되는 등의 문제 발생 우려
- ② **표창장** 등의 **제한 사유**가 없어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 운전 등)**가 **포상**을 받는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 가능
 - 포상은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등에게 하는 것인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포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 등의 **포상 취소 규정** 부제로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포상 취소**를 못하는 등 **소극 행정** 유발 우려

10.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평가대상

포상조례 등

■ 충청북도 「충청북도 포상조례」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국, 원, 실장, 시장, 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제16조(포상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과 제7조의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부 포상의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포상에 대하여도 포상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적이 허위·거짓인 경우 취소 여부를 제량으로 두고 있는바,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하여는 당연 취소로 변경 필요

〈 시·도(의회) 별 포상 규정 현황〉

구분	공적심사 생략		포상 제외자		포상 취소	
	집행기관	의회	집행기관	의회	집행기관	의회
강원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경기도	미흡			미흡		
경남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경북도		미흡		미흡		미흡
광주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시				미흡		미흡
서울시					미흡	미흡
세종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울산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전남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전북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제주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충남도				미흡		
충북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